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삼성그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형[주식] 집합투자기구
다. 보관 • 관리기간: 2010.05.20 – 2011.05.19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종개업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케이비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하이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일자	변경 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0. 07. 2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제2 이 특자신탁은 삼성특자(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로 한다.	이 특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8 조(수익자) 제41 조(수익자)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하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금일로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하 “분배금 지급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금일로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제41 조(투자설명서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류를 위하여 다음 각에 따른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류를 위하여 다음 각에 따른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배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1 월, 4 월, 7 월, 10 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1. 지급기준일: 1 월, 4 월, 7 월, 10 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2.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 가입 이익분배금에	2.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 가입 이익분배금에
제48 조(수익자)	제48 조(수익자)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이익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제48 조(수익자)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이익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향을 그 사유발생 후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공고등) 인터넷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투자업자·판매회사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영업소에 게시하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영업소에 게시하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그 영세 및 상각을	3. 법령이 정하는 부실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그 영세 및 상각을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수)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기간의 초일부터 보상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기간의 초일부터 보상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0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25 ⑤ 생 략	1.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3.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3.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보수율: 연 1,000분의 0.2 ⑤ 생 략
2010. 08. 26	8.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 전자우편에 의하여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2011. 01. 03	제41 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환제3호에 의하여 집합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을 보할 수 있으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① ~ ③ 생 략 ④ 집합투자업자 가입이익분배금에 이익분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환제3호에 의하여 집합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을 보할 수 있으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 “Zero”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변경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방법	변경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변경후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부합함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부합함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